

[부록]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관련 주요 자료 모음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경과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발표 최종안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최종안 주요 내용
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초안과 최종안 비교
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10문 10답
6.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7.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의견 조사 결과
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과 병행되어야 할 조치

[부록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주요 경과

-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인선은 민감한 문제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문위원들이 더해지고 빠지는 과정을 통해 조정됨. 자문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전망을 세워나가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자문위원들은 교육 현실과 학생인권에 관한 공통의 인식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가지고 자체 인권 학습을 수행하는 등 긴 사전 작업을 거쳤음.
- 2009년 10월~11월의 두 달 동안 연구용역팀이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외국과 다른 지역 사례 연구 등을 거쳐 12월 초에 연구보고서를 제출.
- 2009년 10월부터 학교 공지 등을 통하여 학생참여기획단을 모집, 11월말쯤에 학생참여기획단 구성을 완료. 이후 4가지 미션으로 학생참여기획단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경험이나 학생인권조례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나 캠프 등도 논의되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함.
- 2009년 10월 말~11월 동안 지역별로 사전협의회 개최. 특수교육 등 여러 분야들에 관해서도 사전협의회 개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 2009년 12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2010년 1월에 자문위원회 주최 공청회가 3차례 개최됨. 2월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A안과 B안 두 가지 안을 제출. 이후 교육청 주최로 3월에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 1회 추가 개최.
- 2010년 3월 23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 예고. 집회의 자유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B안으로 입법 예고. 학생인권조례안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2010년 6월 7일 심의 보류 처리됨.

□ 2009. 05.28(목)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009.07.30(목)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교육감)

- 자문위원 9인으로 구성
-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위원장: 곽노현 교수, 부위원장: 김인교 교장)

□ 2009.08.20(목) : 자문위원회 제3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 4명 추가 위촉(오동석 아주대 교수 외 3명)
- 교장, 교감, 생활지도교사, 경기도교육위원, 법학교수,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 학생

대표는 포함되지 않음.

- 2009.09.25(금) :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 및 제6차 협의회 실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 개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경기교육가족의 영상 의견/ 조례 제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조례 제정 관련 설문지 작성

- 2009.09.28(월) : **위탁연구용역 계약 체결(성공회대학교 평화인권센터)**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 연구 개발 경력이 선택 기준으로 작용

- 2009.10.6(화)~10.20(화) : **찾아가는 생활지도 연수**
 - 중·고등학교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연수 실시

- 2009.10.16(금) : **자문위원회 제7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회 자문기구로 학생참여기획단을 500명으로 확대하여 모집·운영기로 결정

- 2009.10.23(금) : **학생인권조례 관련 10문 10답 완성**

- 2009.10.28(수)~11.3(화) : **학생인권조례제정 사전협의회 개최**
 - 경기도 지역을 9개 권역(용인, 의정부, 고양, 수원, 안산, 안양과천,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으로 나누어 자문위원 4명을 한 팀으로 구성, 현장 방문
 - 권역별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 약 1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팀별로 자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설문조사를 실시
 - 6개 권역은 실시하였으나, 신종플루로 인하여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 지역은 실시하지 못함

- 2009.10.26(월)~11.05(목)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관련 학생 작품 공모전 실시**
 -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별로 초·중·고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 각 영역별 우수 작품 교육감상 시상기로

- 2009.11.20(금)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중간발표회 및 일본 가와사키 아동권리조례 제정팀과의 협의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중간 보고회 개최
 - 학생작품공모전 입상자 발표
 - 일본가와사키 조례 제정팀 8명과의 협의회 개최

- 2009.11.26(목) : **시민단체 및 특수집단과의 사전협의회 실시**
 - 전문상담교사, 대안학교 교원, 특수학교 및 학부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가와 4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전협의회 실시

- 2009.12.10(목) :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학생공모전 수상작 발표
 - 교육감상 시상. 작품 결과는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탑재

- 2009.12.17(목) : **자문위원회 초안 발표**
 - 자문위원회 초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0.01.11(월) : **자문위원회 제11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회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자문위원회 입장문 검토. 이후 홈페이지 탑재
 - 초안에 대한 전문가 15인(한국외대 교육학 유성상 교수 외) 의견조회

- 2010.01.19(화) : **자문위원회 초안 1차 공청회 개최**
 - 경기 남부지역,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청회 개최

- 2010.01.24(일) : **자문위원회 초안 2차 공청회 개최**
 - 학생참여기획단 중심, 학생 대표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

- 2010.01.25(월) : **자문위원회 초안 3차 공청회 개최**
 - 경기북부 지역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 2010.02.10(수) : **자문위원회 최종안 발표**
 -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은 A안과 B안으로 나누어 교육감 선택의 몫으로 남겨둠.

- 2010.03.07(일) : **경기도교육청 주최 공청회 개최**

- 2010.03.23(화)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 예고**
 -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B안으로 입법 예고

- 2010.04.30(금) : **경기도교육청 내부 법제 심의**

- 2010.06.07(월) : **경기도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보류**
 -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

[부록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발표(2010.02.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

조례 제 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예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위협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근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A안]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A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B안]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

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 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행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부록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례의 위상과 목적

-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자치법규로서의 위상
-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두텁게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경기도의 교육자치규범. 학생인권의 실현은 소통·자율·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타인의 인권을 아울러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에 기여

□ 조례안의 체계 및 구성

- 5개의 장(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보칙)과 부칙(시행일 및 경과조치)으로 구성
-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제1조), 개념 정의(제2조),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원칙(제3조),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의 총론적 책무(제4조), 교육환경개선 노력의무(제5조) 등을 규정
- '제2장 학생의 인권'에서는 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제2절), 교육에 관한 권리(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제4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5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6절), 복지에 관한 권리(제7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8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제10절) 등 10개 절로 구분하고 각 절마다 하위 조문을 두어 학생인권의 목록을 규정.
-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에서는 인권교육과 홍보(제29조 내지 제33조),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인권실천계획 수립(제34조, 제35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6조, 제37조),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제38조), 시민활동 지원(제39조) 등을 규정하
-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부분에서 학생인권옹호관(제40조 내지 제44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제45조 내지 제47조) 등 실효성 확보장치를 마련. 학생인권옹호관은 강제적 조치보다는 상담, 조사와 시정권고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

□ 주요 조항 해설

○ 제4조(책무) 제3항

- 학생인권의 보장은 교사나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및 배려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학생의 책무로서 명시

○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에 있어 성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소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차별 등 조례안이 구체화하지 못한 많은 차별 영역을 시정해가고 그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준거 규정으로서 기능.

○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2항

- 체벌 금지

- 학생간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도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교육방법, 상담교사의 확충 등 교육여건의 개선,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마련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 조례안은 0교시, 야간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

-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규교과 외 학습시간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침. 이에 조례안은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과중한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조례안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조례안은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두발의 길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용모에 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

- 조례안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전면 자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 두발 길이 제한만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으며, 그 밖의 용모 제한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

- 조례안이 교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단위 학교별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복 착용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 탈선 증가나 학습분위기 훼손 등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으나, 개성표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학생들의 요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두발 길이 규제의 경우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획일적 통제방식이 지니는 문제가 크다는 점, 탈선을 막고 학습분위기를 조장할 다른 교육적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점, 불합리하고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점, 두발길이 규제 금지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을 규정

○ 조례안 제13조(사행활동의 자유) 제4항

- 조례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이나 소지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음을 규정

- 휴대전화를 통신수단이나 호신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를 제한하되, 교육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휴대전화 사용 등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부분적으로 규제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 조례안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이나 양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반성, 서약 등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 조례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

- [A안]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음을 규정. 이때 교육 목적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학교장의 부가조건 또한 너무 늦은 시간 회피, 안전 확보를 위한 요청 등 집회방식에서 부수적인 제한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B안]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구체화한 규정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헌법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 이러한 기본권은 조례로써 부정될 수 없음. 다만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뿐.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조례안은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기구 구성 및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조례안은 학생이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일정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 권한에 걸맞은 성숙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책임의식 또한 길러짐.

○ 제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조례안은 학생에게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

○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조례안은 징계사유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권, 징계공고 금지 등이 보장되는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 특히 징계가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함.

○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조례안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적정한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마련,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별도의 인권교육프로그램 마련,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서의 편의 제공 및 참여 보장, 가정형편 때문에 빈곤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의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관해 규정

○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제3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제33조(보호자 교육)

- 조례안은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해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교원에 대한 인권연수,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또는 간담회를 일정 시간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학교로 하여금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

○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 조례안은 인권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제도개선 등 학생인권 관련 안건에 관해 심의 권한을 가지는 전문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지니며,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학생 스스로의 의견을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제40조 내지 제44조 학생인권옹호관

- 조례안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규정

- 학생인권옹호관은 세계 각국에서 아동 권리구제기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옴부즈퍼슨(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여금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

- 학생인권침해 상황을 야기한 관련자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진상을 조사하고 학생에 대한 상담, 조력 등 학생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특성상 적절하다는 고려에 따라 조례안은 시정권고를 넘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수단이나 제재방법을 규정하지 않음.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할지역별로 상임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3년 임기, 1회 연임 가능)을 두고 전문조사원 등 옹호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인원을 두도록 함.

○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부칙 제2조 제2항

- 조례안은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 단위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학교의 교칙 등 규정을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토록 규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교장,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대표와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토록 하였으며,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학교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한을 규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과 초안 비교

<표> 최종안과 초안의 주요 조항 비교

표제	최종안	초안	비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의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언어”의 예시 포함
폭력으로부터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u>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u>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u>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u>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폭력양태의 구체화
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③ <u>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u>학습곤란을 겪는 학생</u>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습권)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에서의 권리 추가 -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예시 추가
정규교과 외 학습활동	제10조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u>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u>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③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의 의견 수렴 명시
휴식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u>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u>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u>강요함으로써</u> 학생의 휴식을 취할	제11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	- 휴식권을 ‘휴식을 취할 권리’로 명확하게 표현 - 휴식권의 구체화 - 강요 금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록 하여야 한다.	
사 생활의 자유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신설
사 생활의 비밀	제14조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적 정보에 교육비 미납사실 등을 예시로 제시
사 상 양심 종교 자유	[A안]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반성문 자체 허용의 의미 명확화 [A안] - 제1항에서 기본권 확인, 제2항에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보장 구체화, 제3항에서 종교의 자유 구체화 [B안] - 표제 등의 “사상” 삭제 -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른 양심의 개념 표현
표 현의 자유	[A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학생은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	[A안] - 권리 규정과 학교 의무 조항 분리 [B안]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 삭제

	<p>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p> <p>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B안]</p> <p>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p> <p>④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사 회 복 지 권 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누구나 인간다운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 - 상담조력에서 적절한 지원으로 확대
교 육 환 경	제22조 ② 학교는 <u>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u> , 청결한 환경의 유지, <u>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u> , 적절한 냉난방 관리, <u>녹지공간 확대</u>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② 학교는 청결한 환경의 유지, 적절한 탈의 및 휴게 등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화장실에서 추가 - 학교환경에서 '녹지공간 확대'에서 추가
징 계 등 에 서 권 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③ 학교는 <u>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u> ,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징계절차에서의 권리) ③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지도를 포함하는 표제로 변경 - 징계 내용 공고 금지 포함
청 구 권 및 청 원 권	제27조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u>비밀을 보장받으며</u> , 그 <u>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u> .	제27조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권 등 행사에 대한 비밀 보장
소 수 학 생 의 권 리 보 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u>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하여 신설

	<p>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의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 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학교 내 인권 교육 등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노동권 관련 교육 강조
학생 인권 옹호관 설치	제40조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39조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임명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 요구 - 옹호관 활동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제 도입
학생 인권 옹호관의 직무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u>직권조사</u>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u>공표</u>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3.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4.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5.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 옹호관의 직권조사 인정 -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구체화

	위해 필요한 업무	위해 필요한 업무	
--	-----------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10문 10답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2009년 10월)

1.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만 생각하다 보면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학교생활이 즐거워야 공부도 즐겁고, 공부가 즐거워야 몰입도 가능하겠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가고 싶은 공간으로, 폭력이나 차별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도, 면학분위기도 한껏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규제 일변도로 학생을 통제한다고 해서 공부에 대한 몰입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갖고 몰입하기를 원한다면 통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발규제를 없애면 공부는 안 하고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될 거라고 우려하시지만, 이미 많은 대안학교들과 몇몇 일반학교의 선도적인 실험으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이지 않은 우려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려 규제 일변도로만 가다보면 학생들이 더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억눌리는 지점에서 더 자극을 받는 법이니까요.

☞ 공부라고 하면 교과 공부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사람살이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리고 인권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익힐 때 가장 잘 학습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과나 도덕과 등의 교과에서 인권의 가치와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시민이란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자유로운 사람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인권에 대한 공부는 시끌시끌한 공부입니다. 조용한 시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권에 대한 공부도 시장처럼 시끄러워야 제대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적, 정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이고,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권 교육을 열심히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수업 방해 행동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2. 우리 학생들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도록 의무에 대한 교육이 먼저이지 권리가 먼저 주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 학생들이 인권을 서툴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가 되시나 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방임하거나 무책임한 존재로 기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와 방임, 의무와 무책임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그 길,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걸어가지 않아 좁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길을 확장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인권을 배우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나 갈등이 빚어질지도 모릅니다. 학생들만큼이나 교사들에게도 인권은 아직까지 충분히 경험되지 못한 가치이기 때문에 서투름이 부르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 없듯이, 학생도 교사도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학생도 교사도 인권에 대해 성숙할 수 없습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 가정을 꾸린 이후 고스란히 폭력을 대물림하듯이, 인권을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이 없는 교육'은 질서정연해보일지 몰라도 학생들의 영혼에 대한 보살핌은 없는 교육이 아닐까요?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교육이 아닐까요?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도 하겠지만,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아볼 것입니다. 인권교육은 권리 주체들의 인식과 힘을 키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동시에 길러줍니다. 인권교육과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함께 간다면, 우려되는 혼란과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인권은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권이 부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권리가 주어질 때 책임 또한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 안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학생에게는 인권이 더욱 필요합니다.

3. 학생들 사이에 장난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폭력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통제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요?

☞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로서는 당연히 제기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 가운데 학생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 성적이나 생활을 비관한 학생 자살,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등일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사의 경우 종종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십니다. 보호자의 경우 학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불만을 터뜨리십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학

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방임 내지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드시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일일이 규제하고 훈계해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장난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고삐를 죄고 뽕뽕 묶어두고 울타리를 친다고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외려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널찍한 목장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기와 타인의 몸을 돌볼 줄 아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일일이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학생은 자기 몸은 물론 타인의 몸을 제대로 살피고 돌볼 줄 모릅니다. 교사가 아무리 일일이 살핀다 하더라도 매순간 모든 학생을 살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과 예방교육은 학생의 안전뿐 아니라 교사의 업무 피로도와 부당한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4.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건 교사들을 문제집단으로 보기 때문 아닌가요? 요즘 과잉체벌 교사처럼 간 큰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 인격 존중합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교사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교사의 과잉 생활지도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국제인권기준에서는 교육권의 본질적 요소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규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 인권의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어야 할 인권을 좀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교사들이 문제집단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학생인권의 지지자이자 옹호자로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사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교사 개개인의 인식과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고 나면, 종종 교사 집단 전체가 비난을 받곤 합니다. 학생인권이 무시된 사례를 보면 해당 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구조나 ‘군사부일체’로 대표되는 사회의식의 문제가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구조와 사회의식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학생인권이 무시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사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조례 제정에 적극 지지를 표하고 나서주신다면, 오히려 교사 전체를 문제집단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학생 지도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권리를 당당하고도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당연히 교사들에게도 즐거운 학교일 것이고, 교사들의 자긍심이 지켜질 수 있는 학교일 것입니다.

5.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학생인권만 얘기하고 교권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당하는 교사들도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교사들도 상처받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권한 또한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권보다는 의무가 먼저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리를 행사하면서 배우고, 참여하면서 책임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당혹스런 상황이 간혹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생이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학생들도 두려움 때문에 교사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 교사에게 상처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생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교사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기보다는 '권력자'로 보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강자는 상처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사를 괴롭히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즐기는 학생의 경우는 '강자'에게 도전함으로써 주위 학생들에게 힘을 과시하고픈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여교사 등 약해보이는 교사들이 주로 그런 학생들의 표적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동등하지 않은 관계'가 문제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변화하고, 교사의 인권에 대한 존중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교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학생은 몸이 아픈 환자에 비유해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몸을 뒤트는 과정에서 의사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해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를 부러 괴롭히려 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몇몇 학생들이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도 어찌면 아픈 환자의 뒤틀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나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뿌리를 건드려야지 교권을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나쁜 행동'은 더 약한 사람에게 옮겨갈 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의 행동을 죄다 잘못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뜻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교사의 뜻이나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당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학생인권을 신경 쓰다 보면 요즘처럼 거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책임도, 지도할 권리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니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지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지도'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상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인권은 몸에서 떼어낼 수 없지만,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정,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생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학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학생 지도'와 학생인권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 '지도'라는 말에 대해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교사는 늘 옳다는 전제 하에서 학생을 '지도'하려다 보면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지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교칙(학교생활규정 등) 역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한 학생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때, 학생인권 존중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교칙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면, '지도'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준수와 책임의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위협에 처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때 그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이때 행사되는 힘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힘이니까요. 다만 학생의 위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교사마다 다를 수 있고,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압이 가해지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역할입니다.

7. 학교현실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 지도의 책임이 교사에게만 내맡겨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인권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란 말입니까? 그럼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입니까?

☞ 수업시간에 교사 혼자서는 대처하기 힘든 난감한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요. 그래서 대다수 교사들이 차이도 크고 갖가지 사연을 가진 다수 학생을 동시에 수업에 집중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계실 겁니다. 다른 지원책 없이 교사 개인의 역량이나 통제방식에만 내맡겨두고 있는 학교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자주 만나 뵈었습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개개인의 책임만 늘여가는 방향을 지향하지 않을 겁니다. 학생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 역시 수업에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학생이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돌봄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교육의 기본이겠지요. 한 선생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

다. 한 학생이 자기 수업시간마다 자고 있기에 앞으로 불러내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포기한 듯해 보이는 그 학생의 모습이 한심해보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홀어머니와 함께 새벽 바닷가에 나가 고깃배에 잡힌 생선들을 껌째에 담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새벽일을 하고 학교에 등교 하니, 1교시 수업에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연을 알고 나서 그 선생님은 그날로 체벌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판단하는 자기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통감하셨던 것이지요. 이 사례에서처럼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고, 수업방식이 그 나이의 특성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다른 일로 고민이나 불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연을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집중을 요구하고 행동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 이면의 마음을 읽었을 때 다양한 대처법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교사의 역량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 교사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학생의 문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는 학교 차원에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을 것입니다.

8.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인권 이야기하는 소수 학생의 의견만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단위에서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규정을 정해나가면 되지,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 교사, 학생, 보호자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너무나 반갑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일환으로 단위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도 적극 독려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적극 독려하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3주체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만,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인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선으로 지켜져야 할 학생인권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단위 학교에서의 자발적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학생인권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더라도 고문수사, 불공정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은 기본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또한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학생이 소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학생이 침묵하고 있고 소수 학생만 인권 주장을 펼친다고 해서 다수의 학생이 인권에 관심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침묵은 학생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학교 상황이 낳은 결과이지, 학생인권 보장을 미뤄두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아직 인권에 대한 이해나 욕구가 깊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내던져서도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소수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인권이 돈독히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9. 우리 교육의 방향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까요?

☞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구체화함으로써 학교가 고려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 단위의 자율성은 분명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칙 제정 등 학교 단위의 자율권은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는 규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각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는 구제기구 설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바깥에 구제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 안에서 조용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밖으로 알려져 학교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구제장치가 없는 인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권리구제기구들이 설립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나 학생을 지지하는 교사, 보호자 등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인권조례에는 꼭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제장치의 구체적 형태나 절차, 학교 바깥에만 설치할지 학교 안에도 설치할지 등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학교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학생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고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진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칭찬 받을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학교 안에서의 자발적인 해결 노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사건이 숨겨지거나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고, 학교 안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公的) 기구는 요구됩니다.

☞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는 과정인 만큼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은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에 그칠 것입니다. 또한 그 혼란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 위해서도 학교 밖 권리구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존재를 혼란을 야기하는 훼방꾼이라고 보지 마시고 학생인권 보장을 지원하는 협력자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2010년 1월 1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저희 자문위가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시고 보완 지점을 짚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희 자문위는 초안에 대한 관심과 논쟁 덕분에 우리 사회가 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위원회는 1월에 예정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 경기도 교육위·의회와의 간담회, 서면·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하여 최종안을 만들어 김상곤 교육감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자문위가 마련한 초안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잘못 부풀려진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은 저희 자문위가 가진 부동(不動)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향후 조례안을 둘러싸고 진행될 논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자 발표하는 것입니다.

1.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인권 보장은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인권은 응급환자에게만 공급하는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사람이란 누구나 매일 흡입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권 보장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애당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현실세계에서는 언제나 늦게 시작해서 더디게 진행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 그동안 학교 현장에는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왔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어린 학생들의 외침이 우리 어른들의 심장을 두드린 지도 오래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응당 보장했어야 할 권리를 한참이나 뒤늦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요구가 없더라도 인권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인 만큼, 모든 교육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권에 관한 한 학생도 교사도 관리자도 보호자도 모두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성숙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입니다. 성장은 성장할 기회에 초대받고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을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인권 보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준비가 부족한 학교현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준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학생인권조례는 반(反)교육이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국제사회는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교육이 인권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친화적 교육이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교육 △질 좋은 교육, 그리고 △학생이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학생의 관심과 소질, 성숙 정도 등에 따라 교육적 자극이 주어져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교육은 폭력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설계하자는 제안이지, 교육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요소들을 거둬내고자 합니다.**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교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사에게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지 않을 때 어떻게 창조적인 학습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의 삶에 대한 보살핌이 있는 학교, 참여를 통한 변화를 성취하는 경험이 제공되는 학교,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열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자 교육구성원 모두가 염원하는 학교의 상이기도 합니다.

-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주어질 때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방종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부당한 통제나 일방적인 지시를 거둬낸 자리에는 대화와 소통이 쉼트게 마련입니다.**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소통의 과정은 교육적으로도 가치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글로벌 창의 인재'는 '글로벌 창의 교육'에 의해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창의 교육의 초석은 자율성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자율과 획일에 길들여진 학생들을 자율과 다양성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지도가 불가능해진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학생인권조례는 정당한 교권 행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반면 폭력과 강제, 차별에 기반한 교권 행사와는 단호히 결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부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권 행사로 교사 전체의 자긍심과 권위가 깃뻛힌 사례들을 여러 차례 목도해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불미스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교권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자의성(恣意性)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당한 기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개인의 인격에 내맡겨둘 수 없기에, 사회에 법이 필요하듯 학교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지도가 정당한 기준에 충실하게 행사될 때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방식으로 21세기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할 때 엇갈림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욕적인 처벌이나 강요가 학생들의 반감을 사는 것도 당연합니다. **교사의 지도나 교권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사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교육적 만남과 지도 방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교사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히 ‘No!’라고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위협에 빠뜨리는 학생이 있다면 마땅히 제지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지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힘이 행사되거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살핌이 자의적으로 철회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 부적응이든 공격성 증가든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을 살피고 대처방안을 기획하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창조적 역량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 **교사들이 학생들 머리나 치마 길이를 재러 다니느라 바쁘고, 학생들에게 반강제로 동의서를 받아내 야간자율학습에 남게 하고, 과반수 이상이 옆드려 자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교권 추락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창조적 역량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정당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요청됩니다.

4.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 누군가 불공정거래 규제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이나 과속규제가 운전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할 기본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두 법 모두 학교와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같은 상위 법규를 학교현장에서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한 하위규범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 상위 법규도 부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학생인권조례는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헌법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구체화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학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상위 법규와 그 법규에 따른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5. 몇 가지 쟁점 조항에 대하여

- 학생인권조례는 총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빚어진 논란의 대상은 일부 조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우려만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전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열악한 학생인권 현실과 조례 제정을 희구해온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가혹하게 들립니다. 더불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우려도 부풀려진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두발 길이 자유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두발의 전면 자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두발 길이 제한만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12조 1항). 또한 그 밖의 두발 제한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2조 2항). 그동안 두발단속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불만만 끊어올랐던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술하게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두발 지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학생들이 그 규정의 존재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엄격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따르느라 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도 그 규정을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그 바람에 교사의 권위도 서지 못했습니다.

- 두발 제한이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두발에 오히려 집중됩니다. 두발 단속을 피하느라 등교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머리를 자르느라 공부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두발 제한이 오히려 면학 분위기를 흐뜨려온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두발을 풀어주면 탈선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불이 났기에 연기가 나는 것인데도 '연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진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복장 자율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교복, 양말, 신발 등 복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이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학생 참여 등 민주적 절차를 밟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12조). 이는 교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상당수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교복 착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구성원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교복 착용을 단위 학교별로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양말 색깔, 신발 모양, 교복 바깥에 입는 외의의 착용 여부나 색깔까지 정해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추느라 학생과 보호자는 없는 신발이나 외투를 사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또 여학생의 경우 바지 교복은 입지 못하게 하거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복장규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는 교육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3)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17조 2항)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집회장소나 물품 등에 대한 규정이나 신고절차 규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의 하나입니다. 자문위 초안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뿐이며, 다만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면, 학생은 인간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는 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학생들이 집회를 열게 되면 학교가 혼란에 빠지거나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나친 추측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인 정치 이슈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발언하거나 행동할 것입니다. 반면, 학내에서 집회를 연다면 학교를 대상으로 할 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내집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여는 것이 우려된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절차가 잘 돌아가면 됩니다.** 자문위 초안이 17조 1항에서 먼저 학생들의 의사 표현권을 보장하고, 뒤이어 2항에서 학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항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2항의 권리를 학생들이 굳이 꺼내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 **학내 집회 자유 보장으로 학생들이 '정치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정치를 정규 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정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정치적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나의 정치적 공간입니다. 더구나 학생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표현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것이 '정치화'라는 딱지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4) 반성문 강요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에게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16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생각을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갖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교육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몇몇 학교에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진술서가 아니라 교사가 불러주는 대로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학생·보호자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바로 이런 불합리하고 반교육적인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과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이 조항은 결코 학생들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반성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반성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만드는 행위, 학생의 자기 성찰과 교사와의 교육적 소통은 사라진 채 억지로 쓰인 '반성문'만이 교육이 이루어진 증거인 양 남아 행세하는 비교육적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5)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10조 1항)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미 교육당국이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원하는 학생은 남아 공부할 수 있고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실제로 '동의'한 것도 아닌데 동의한 것처럼 일괄 동의를 받아내는 일은 상당히 비교육적인 일입니다. 이런 기만을 목격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정규교과 외 학습을 강요당할 때 학습 효율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 체벌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체벌이 금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도 포함됩니다.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상해나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교육이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 체벌을 교육이라고 우기는 일은 없습니다.

-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체벌을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몽둥이나 손찌검, 발길질을 행하는 일부 교사의 자의(恣意)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에 대해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교사들도 상담이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될 때 체벌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폭력의 가장 무서운 효과는 그 폭력이 내재화되고 악순환 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솔선 수범하여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 학생 간 폭력을 예방, 근절하려는 교육적 지도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폰의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13조 4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지는 보장하되 수업시간 중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 휴대폰은 이미 대다수 학생들에게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호신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갈등이 불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휴대폰을 압수했을 경우 그 보관 기간과 돌려주는 방식도 해당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8)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에게 학교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20조 1항)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타인과의 소통 및 조율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유엔이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바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의 참여를 가로막음으로써 성숙의 기회를 차단해온 기존 학교 모델'로부터 '학생의 참여를 통해 성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권한에 걸맞게 깊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학생이 있더라도 권한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정신 아닐까요.

6.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념 공세에 대하여

- 마지막으로 저희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좌파 교육'이라거나 '운동권 주장'이라거나 특정 단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거나 하는 이념 딱지를 붙이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좌파나 운동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의 기준으로 합의하여 인류의 양식이 된 '인권'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맹비난하는 것은 인권의 반대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자문위는 특정 단체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인권전문가와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복무해온 교장·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위 전체의 명예를 걸고 단호히 부정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 공약이었고, 김 교육감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30일 자문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는 가운데 조례 초안을 합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주민 직선 교육감이 공약을 이행한 것을 두고 재선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경기도민의 박수를 받아 교육감이 재선에 이른다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잘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표를 보낸 주민들의 선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저희 자문위는 부당한 억측이나 이념 공세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이 잘못 흐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이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델을 고민하는 계기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1.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부록 7]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의견조사 결과

□ 지역별 간담회 현장 설문조사 결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경기도내 6개 권역을 돌면서(애초 9개 지역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플루 위험으로 3개 지역은 취소됨)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설명하고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 현장 설문조사에는 학생 177명, 보호자 128명, 교사 141명, 학교관리자 69명 등 총 515명이 참여.

- 사전협의회에는 원하는 교사나 학생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인 보호자,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 학생회장 등 임원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참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확인. 특히 학생, 보호자의 경우 80~90% 이상이 조례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경우에도 높은 공감대를 표현.

<표 1> 경기도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 대답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 대답	응답자수
학생	명	108	60	168	8	1	9	177
	비율(%)	61.02	33.90	94.92	4.52	0.56	5.08	
교사	명	38	55	93	36	12	48	141
	비율(%)	26.95	39.01	65.96	25.53	8.51	34.04	
보호자	명	58	47	105	18	5	23	128
	비율(%)	45.31	36.72	82.03	14.06	3.91	17.97	
학교 관리자	명	9	32	41	22	6	28	69
	비율(%)	13.04	46.38	59.42	31.88	8.70	40.58	
계								515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 자문위원회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 학생인권 보장에 있으며, “자유로운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는 철학에서부터 출발. 또한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을 열 가지 열쇠말을 통해 제시.

<p>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학교의 전망’ 10가지 열쇠말</p> <p>1. 학생은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다.</p> <p>2. 학교는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배움터여야 한다.</p>

3.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학교는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4. 배움은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5.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6. 학교는 학생의 학습뿐 아니라 삶도 돌봐야 한다.
7. 학생의 모든 권리는 연관되어 있고 돌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의견과 자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8. 학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생을 돌봐야 한다.
9.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의 언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10.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때 권리는 비로소 의미있어진다.

- 위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기본 정신과 철학에 대해 교육주체들의 공감 정도도 매우 높음을 확인. 이와 더불어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혼련되어야 하고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길러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도 학생 87.56%, 보호자 78.91%에 이르렀고, 교사 역시 절반 이상인 56.3%가 긍정적으로 대답

<표 3> '경기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에 담긴 자문위의 기본정신과 철학에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 대답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 대답	응답자수
학생	명	72	86	158	18	1	19	177
	비율(%)	40.68	48.59	89.27	10.17	0.56	10.73	
교사	명	31	67	98	31	12	43	141
	비율(%)	24.11	47.52	71.63	21.99	8.51	30.5	
학부모	명	54	47	101	25	2	27	128
	비율(%)	42.19	36.72	78.91	19.53	1.56	21.09	
학교 관리자	명	12	32	44	21	4	25	69
	비율(%)	17.39	46.38	63.77	30.43	5.80	36.23	
계(명)								515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 사전협의회에서 학생인권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5가지 과제를 선택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결과, 파악된 교육 주체별 학생인권 과제는 아래와 같음.

<표 4> 학생인권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섯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항목	학생 (177명)		교사 (141명)		보호자 (128명)		학교 관리자 (69명)		계 명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1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119	67.23	50	35.46	44	34.38	13	18.84	226
2	왕따 등 집단 괴롭힘 금지	85	48.02	84	59.57	84	65.63	43	62.32	296
3	자율적 학생회 · 학생 활동 보장	99	55.93	67	47.52	48	37.5	48	69.56	262
4	무작위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보장	52	29.38	27	19.15	26	20.31	13	18.84	118
5	각종 고민상담, 교육 지원 등 학생 복지 강화	60	33.90	79	56.03	84	65.63	69	100	295
6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59	33.33	29	20.57	61	47.66	30	43.48	179
7	학생인권 침해 구제 수단 강화	39	22.03	18	12.77	38	29.69	21	30.43	116
8	체벌 금지	80	45.20	40	28.37	37	28.91	41	59.42	198
9	가정형편/성적/용모 차별 금지	66	37.29	49	34.75	43	33.59	31	44.93	189
10	야간자율학습 등 과잉학습 강제 금지	89	50.28	64	45.39	48	37.5	37	53.62	238
11	각종 문화 활동 접근과 참여 보장	40	22.60	44	31.21	42	32.81	44	63.77	170
12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차별 금지	26	3.09	31	21.99	20	15.63	39	56.52	116
13	인권교육 강화	25	14.12	41	29.08	33	25.78	47	68.12	146
14	기타	3	1.69	0	0	0	0	0	0	3
계		991		723		703		498		2,403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표 5> 교육주체들의 우선 요구 학생인권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	두발·복장	자치활동	과잉학습	집단괴롭힘	체벌
교사	집단괴롭힘	상담 등 복지	자치활동	과잉학습	두발·복장
보호자	집단괴롭힘 / 상담 등 복지		징계	자치활동 / 과잉학습	
관리자	자치활동	인권교육	문화권	집단괴롭힘	체벌

□ 연구용역팀 설문조사 결과

- 자문위원회는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를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진에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의식 조사와 학생인권 증진 제도에 관한 연구를 의뢰. 연구용역팀은 △학생 2,020명(초등 934명, 중·고 1,086명) △교사 586명 △경기도 거주 보호자 345명 등 총 2,9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놓음.

-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학생 당사자(중·고등학생 1086명 중 961명이 응답)의 의견이 87.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표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찬성한다	947	87.4
반대한다	14	1.3
의견없음	123	11.3
합 계	961	88.7.0
※ 진영중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의 언어폭력과 집단괴롭힘을, 중등학생의 경우 두발·복장 규제를, 교사와 보호자는 모두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과 강제 과잉학습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강제 야자·보충수업 문제나 두발규제 문제에 대해 학생뿐 아니라 상당수의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 교육주체들이 지적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인권문제(복수 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	초 등	언어폭력 433명(12.5%)	학교폭력 330명(9.5%)	잡은 학교시험 280명(8.1%)	벌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벌) 255명(7.3%)
	중 등	두발규제 770명(24.8%)	복장규제 580명(18.7%)	강제 과잉학습 464명(15.0%)	단체기합 및 체벌 278명(9.0%)	학생의사표현 규제 277명(8.9%)
교사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410명(24.0%)	강제 과잉 학습 348명(20.4%)	두발규제 174명(10.2%)	학생의사표현 규제 151명(8.8%)	단체기합 및 체벌 141명(8.3%)

보호자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233명(22.8%)	강제 과잉 학습 152명(14.8%)	학생의사표현 규제 145명(14.2%)	단체기합 및 체벌 109명(10.6%)	두발규제 103명(10.1%)
※ 진영중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 또한 연구용역팀은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조사함. 이에 대해 △입시경쟁 해소 △인권교육 강화 △학생 참여 보장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리구제수단 강화 △보충·야자 등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고루 선택함.

<표 7>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구 분	중·고등학생		교사		보호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입시경쟁 해소	489	16.0	447	26.0	103	10.1
인권교육 강화	261	8.5	227	13.2	80	7.8
노후한 교육 시설 개선	188	6.2	197	11.4	109	10.6
학교 의사결정예의 참여 보장	368	12.0	176	10.2	32	3.1
권리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278	9.1	108	6.3	233	22.8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237	7.8	119	6.9	60	5.9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	124	4.1	76	4.4	145	14.2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325	10.6	76	4.4	56	5.5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474	15.5	207	12.0	152	14.8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310	10.2	88	5.1	54	5.3
합 계	3,054	100.0	1,721	100.0	1,024	100.0
※ 진영중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부록 8]

조례 제정과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조치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2010년 2월 10일)

-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조회와 공청회, 자문위원회 자체 논의 등을 거쳐 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조치들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담긴 학생의 권리들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으로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인권 보장을 개별 학교나 교사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교사·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교별 규정개정위원회 구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조례 제정과 동시에 시급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럴 때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문위원회가 제안하는 병행조치들은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일선 학교의 의무 이행과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이 마땅히 취해야 할 정책과제들입니다.

1. 조례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 제시

1)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 학교 단위에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참고할 만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 지침서 마련·보급

- 조례에서는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의 목록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관행들 중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적 지도인지 등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지침서 형태로 마련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안적 생활지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학내 권리구제절차 또는 상담체계의 정비 지원

- 학교 단위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다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내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나 행동이 조례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때,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별도 기구를 구성하여 학생인권문제를 총괄 지원하고 학내 해결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학내 구제 절차는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인권상담실이나 학생인권옹호관, 지역사회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교육청-일선학교-지역사회의 상보적 관계 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 합니다.

- 체벌을 대신할 상담체계 구축과 대안적 교육 지원 방식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학생 상담의 구체적 내용과 지원 절차를 마련할 때, 조례안의 정신에 맞는 학생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학생소수자의 인권증진 방안 제시

- 학생들이 책임 있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학생자치기구에게 보장해야 할 구체적 권한을 목록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 취약한 인권상황에 놓여있는 특정 범주의 학생들(학생선수,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시행되어야 합니다.

2. 학생인권과 조례에 관한 적극 홍보와 교육

1) 모범 사례 발굴 소개

- 학생인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교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참고할 만한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 모델로 전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이나 정책연구학교 지정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 연구

- 체벌 없는 학생생활지도 방안, 학생의 문제 행동 발생 시 비폭력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처방안, 교사의 정당한 권한의 구체적 내용 등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관리자·교사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구 과정에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 학생생활지도, 교육복지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 연수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

육청 담당자들은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할 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조례 내용과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학생인권 교육안 마련과 강사단 구축

- 학생인권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제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3.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 학생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상보적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이 확보될 때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모델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교사에게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교육적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권한을 정리하여 교사 연수에서 활용한다거나, 교사회의 법정기구화 등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과 창의적 역량에 기초한 의견이 학교운영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